



大韓建築士協會定款

1965年10月23日創立總會制定

1966年9月24日第1回定期總會一次改正

1967年1月29日第1回臨時總會二次改正

第1章 總 則

第1條 本會는 建築士法에 依하여 設立한 法人으로서
大韓建築士協會(以下本會라 한다)라 부른다

第2條 本協會는 事務所 開設登錄을 마친者로서 組織
한다

第3條 本協會는 建築士의 品位保全, 相互親睦 및 權
益擁護와 建築士業務의 健全한 發展을 通하여 建築
物의 質的向上을 期하고 아울러 國家의 建設施策에
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

第4條 本協會의 主事務所 및 各支部의 事務所는 다
음地에 둔다

主事務所 서울特別市中區武橋洞三三番地壹

支部事務所 서울特別市中區武橋洞三三番地壹

釜山直轄市中區新昌洞一街八番地

濟州市三徒二洞參九番地貳

春川市朝陽洞九貳番地

大邱市中區東門洞拾四番地

光州市不老洞壹貳番地

大田市大興洞四八拾番地

仁川市京洞貳參九番地

清州市南門路二街參七番地貳

全州市慶園洞一街壹貳八番地壹

馬山市中央洞一街五番地

第5條 本協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다음 각
項에 關한 事業을 한다

1. 建築 및 建築士業務에 關한 研究, 調查, 統計,
鑑定, 證明 및 宣傳
2. 建築士業務報酬基準에 對한 簽定
3. 會員의 業務에 關하여 發生하는 紛爭에 對한 調
停
4. 建築에 關한 教養, 作品發表 및 資材展示
5. 建築에 關한 國際機構에 的 參與와 國際交流
6. 會員의 厚生 및 共濟
7. 本協會의 機關紙刊行 및 出版
8. 地方의 으로 必要不可缺한 支部事業에 對한 補助
9. 其他 第6條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

第6條 本協會는 이 定款으로 定하는 外에 組織과

業務運營上 必要한 事項을 規程으로 이를 定할 수
있다

第2章 會 員

第7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會員을 둔다

1. 正會員
2. 推戴會員
3. 名譽會員
4. 賛助會員

第8條 ①正會員은 建築士事務所開設者로 한다. 세로
히 正會員이 된 사람은 本協會所定의 入會金을 納付
하여야 한다

②推戴會員은 本協會에 功勞가 大한 正會員으로서
總會에서 推戴받은 사람으로 한다

③名譽會員은 著名한 外國建築士로서 理事會에서 推
戴 받은 사람으로 한다

④賛助會員은 本協會의 事業目的을 賛同하는 個人
또는 法人으로 한다

第9條 ①本協會의 正會員은 다음의 權利를 갖는다

1. 發議 및 議決權
2. 選舉 및 被選舉權

②會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서 議決權을 行使할
수 있다

第10條 ①本協會의 正會員은 다음의 義務를 진다

1. 定款 및 諸規程의 遵守
 2. 倫理規約의 遵守
 3. 各種會費의 納付
- ②推戴會員이 된 正會員에게는 正會員費를 免除한
다

第11條 ①正會員이 本協會의 定款 및 倫理規約을違
反하였을 때는 本會의 倫理委員會는 理事會의 議決
을 以어 其情狀에 따라 다음의 徵戒를 한다

1. 勸告
2. 贽責
3. 資格停止
4. 除名

②倫理規約 및 倫理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

③正會員이 納付하는 正會員의 會費를 未納하였을 때

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支部長의 意見을 들어 理事會의 議決로서 다음과 같이 處理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경책
2. 6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회원자격 정지
3. 1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제명

第12條 正會員이 建築士法令 本協會의 定款 및 諸規程의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停止 또는 資格停止의 處分을 받았을 때는 其停止期間中 本協會의 會員으로서의 權利가 停止된다

②前項에 該當하는 會員이 本協會의 任員 또는 代議員일 때는 其處分을 받은 날부터 其職責이 解任된다

第13條 正會員이 建築免許取消處分을 받거나 또는 免許가 消滅되었을 때에는 本協會에서 除名된다

第3章 任 員

第14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

1. 會長 1名
2. 總務理事 1名(理事中에서 互選한다)
3. 理事 4名
4. 監事 2名

第15條 ①會長은 本協會를 代表하며 會務를 統理하고 總會 및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

②總務理事는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는 職務를 代行한다

③理事는 理事會를 組織하여 本協會의 運營에 關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

④監事는 本協會의 業務 및 會計事務를 監查하여 이를 總會에 報告한다

第16條 會長,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.

第17條 ①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

②任員中 理事 3名 및 監事 1名의 任期는 初回에 限하여 1年으로 한다

③任員中 缺員이 생긴 경우는 30日以內에 補選하되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

第18條 任員中 會長 및 理事의 就任은 主務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

第19條 ①本協會에 顧問若干名을 두되 國內의 著名한 人士中에서 理事會가 이를 推戴한다.

②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한다

第4章 會 議

第20條 本協會에는 다음의 會議를 둔다.

- ①總會

③理事會

③委員會

第21條 ①總會를 區分하여 定期 및 臨時의 2種으로 한다

②總會는 代議員으로써 이를 構成한다

③代議員은 各支部 正會員中에서 選出하되 正會員每5名當 1名式의 比率로 이를 選出하며 그 端數와 正會員數가 5名 未滿일 때는 이를 5名으로 看做하여 選出한다

④定期總會는 每年 9月中에 召集한다.

⑤臨時總會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召集한다.

1.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

2. 代議員總數의 3分의 1以上이 會議目的을 提示하고 召集의 要求가 있을 때

3. 正會員總數 3分의 1以上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

4. 監事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

第22條 ①總會는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

②總會의 召集은 最少限 10日前에 總會의 目的事項 日時, 場所等을 表示한 文書로서 會員에게 通知함과 同時に 서울特別市內에서 發刊하는 日刊新聞에 公告한다

第23條 總會에서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

1. 定款改正

2. 任員改選

3. 事業報告書, 財產目錄,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承認

4.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承認

5. 基本財產의 設置 및 處分

6.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

7. 其他 理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

第24條 ①總會는 代議員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代議員過半數贊成으로 議決한다

②贊反同數인 경우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

③總會에서 出席代議員過半數의 動議가 있을 때에는 第2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를 議決할 수 있다

第25條 ①理事會는 會長 및 理事로서 組織하고 必要에 따라 每月 1個以上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②理事會는 總會의 委任事項 및 會務執行에 關한 諸般事項을 議決한다

③理事會는 會長 및 理事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 出席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贊反同數일 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

④監事 및 支部長은 理事會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

第26條 ①本協會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

- 1.企劃委員會
- 2.倫理委員會
- 3.編纂委員會
- 4.指導委員會
- 5.研究委員會
- 6.其他理事會에서必要하다고認定하는委員會

第27條 委員會에는 委員長 1名 委員 若干名을 두되
理事會가 이를 選任한다
②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重任할 수 있다.
③委員會의 成員 및 議決方法은 別途 規程이 없는限
理事會에 關한 節次에 따른다.
④各種委員會의 規程은 別途로 定한다.

第5章 事務機構

第28條 ①本協會에 事務處를 두고 處長 1名과 若干
名의 職員을 둔다
②處長은 理事會의 議決로서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
③處長은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를 處理하며 所屬職
員을 指揮監督한다

第29條 ①事務處에는 다음의 部署를 둔다

- 1.總協部
- 2.指揮部
- 3.出版部
- 4.事業部

②部에는 部長 및 職員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을 얻
어 會長이 이를 任命한다

第30條 ①會長, 理事, 監事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
고 事務處長 및 其他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
理事會에서 議決한다
②任員 및 委員이 會務를 執行하기 為하여 費用이
所要될 때에는 其實費를 支給하고 辦公費를 支給할
수 있다

第6章 財產 및 會計

第31條 本協會의 財政은 入會費, 正會員會費, 贊助會
費 및 事業收入金으로 充當한다

- 1.入會費…正會員이 되었을때 納付하는 入會金
- 2.正會員의 會費…正會員이 納付하는 月定會費 및
業務實績에 따라 別途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納付
하는 會費
- 3.贊助會費…贊助會員이 納付하는 會費
- 4.事業收入金…本會의 事業에 따르는 收入金

第32條 ①本協會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9月
1日에 始作하여 다음해 8月 31일에 磬勘한다

②本協會에는 特別會計를 둘 수 있다.

第33條 會長은 每年 9月 10일까지 前年度 財產目錄,
損益計算書,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
監事의 監查를 받아 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

第7章 支 部

第34條 支部는 다음 各項에 關한 事業을 한다

- 1.建築 및 建築土業務에 關한 研究 調査 統計, 鑑
定, 證明 및 宣傳
- 2.建築에 關한 會員의 敎養 및 作品發表
- 3.協會本部에서 委任받은 事項
- 4.其他 幹事會에서必要하다고 認定된 事業

第35條 支部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

- 1.支部長 1名
- 2.幹事 서울特別市 9名以內 釜山市 5名以內 其
他3名以內
- 3.監事 2名
- 4.代議員 代議員數는 第21條(3)項에 規定한 바에
따른다
- 5.分所長 分所當 1名

第36條 ①支部長은 支部를 代表하며 支部會務를 統理
하고 支部總會 및 幹事會의 議長이 된다 支部長 有
故時는 支部長이 指名한 幹事が 이를 代行한다.

②幹事會는 幹事로써 組織하며 支部의 運營에 關한
諸般事項을 議決한다

③監事는 支部의 業務와 會計事務를 監查하여 이를
支部總會에 報告한다

監事 및 分所長은 幹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
수 있다

第37條 支部長, 幹事, 監事, 代議員 및 分所長은 支
部總會에서 選出한다

第38條 ①支部長 幹事 및 分所長의 任期는 2年으로
하되 重任할 수 있다

②監事 및 代議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

③任員의 補選과 그 任期는 第17條3項에 規定한 바에
따른다

第39條 支部가 分所를 設置코자 할때에는 協會의 承
認을 받는다

第40條 支部에는 다음에 會議를 둔다

- 1.總會
- 2.幹事會
- 3.委員會

第41條 ①總會는 定期 및 臨時의 2種으로 한다

②總會는 支部所屬正會員으로 이를 構成한다

③定期總會는 每年 10月中에 이를 召集하고 臨時總會

는 다음의 경우에 召集한다.

1.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
2. 支部所屬正會員總數 3分의 1 以上의 召集請求가 있을 때
3. 監事의 召集要求가 있을 때

第42條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

1. 任員改選
2. 事業報告書, 財產目錄, 損益計算書 및 貸借對照表의 承認
3.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承認
4. 基本財產의 設置 및 處分
5.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
6. 其他 幹事會가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

第43條 總會의 召集者 成員 및 議決에 關한 事項等은 協會總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

第44條 幹事會는 支部長 및 幹事로 組織하여 召集成員 및 議決에 關한 事項等은 理事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

第45條 支部에는 다음의 委員會를 둔다

1. 指導委員會
2. 其他 幹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委員會

第46條 委員會 規程은 協會의 委員會에 關한 規程에 따른다

第47條 ①支部에 事務所를 두고 事務長 1名과 若干名의 職員을 둘 수 있다
②事務長은 幹事會의 議決로서 支部長이 이를 任命한다
③事務長은 支部長의 命을 받아 支部의 會務를 處理하여 所屬職員을 指揮監督한다

第48條 ①事務所에는 다음의 部署를 둘 수 있다

1. 總務
 2. 指導
 3. 事業
- ②各部署의 職員은 幹事會의 議決을 밤에 支部長이 이를 任命한다

第49條 ①支部長, 幹事, 監事, 代議員, 分所長 및 委員은 名譽職으로 하고 事務長 및 職員은 有給으로 하되 報酬額은 幹事會의 議決을 얻어 支部長이 이를 定한다
②任員 및 委員이 會務를 執行하기 為하여 費用이 들 때에는 그 實費를 支給한다

第50條 支部가 總會를 가졌을 때는 10日以內에 다음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밤는다

1. 創立總會의 境遇

一, 會員名單(姓名, 住所, 級別, 事務所所在地 等包含)

二, 任員의 名單 및 履歷書

三,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

四, 總會 會議錄

2. 定期總會의 境遇

一, 會員名單

二, 改選된 任員名單 및 履歷書

三, 事業報告書 및 收支決算書

四,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

五, 總會 會議錄

3. 臨時總會의 境遇

一, 議決된 事項

二, 總會 會議錄

第51條 支部가 總會에서 承認된 事業計劃以外에 事業을 遂行코자 할 때는 그 事業의 實施 10日前에 다음의 書類를 갖추어 協會의 承認을 받는다

1. 事業種目

2. 事業計劃書 및 收支豫算書

第52條 ①支部는 每月 10일까지 會務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協會에 報告한다

1. 前月의 一般會務報告書

2. 前月의 事業報告書 및 會計報告書

3. 그 달의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書

②月例報告外에 特殊事項 또는 突發事項이 있을 때에는 即時 協會에 報告한다

第53條 支部는 一般會務 및 會計에 關하여 協會의 監查를 年1回以上 받는다

第54條 ①支部의 財政은 支部에서 收入되는 正會員會費, 贊助金 및 事業收入金中 支部에 配定된 金額 및 協會의 補助金等으로 充當한다

②支部에 配定되는 金額 및 補助金은 協會의 定期總會에서 定한다

第55條 支部의 會計年度는 1年으로 하고 每年 10月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9月 30일로 마감한다

第56條 支部長은 每年 10月 10일까지 前年度 財產目錄, 損益計算書, 收支決算書 및 貸借對照表를 作成하여 監事의 監查를 받아 總會에 提出한다.

附 則

創立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第21條의 规定에 不拘하고 이 定款의 规定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